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심의일자	2018. 10. 31(수)		
사업명	내곡지구 주차용지2(주차전용 건축물) 신축공사(신규)		
신청위치	내곡공공주택지구 주차장용지2		
의결번호	(경관)2018-14-2	심의결과	조건부의결

[심의 내용] 경관계획
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사업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경관법 제28조에 의한 경관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배치·규모·형태 입면 계획

- 건축물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
- 지하1층의 근생 출입구의 위치를 좌측 주차구획쪽으로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
- 주변 건물들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입면디자인의 개선을 검토하기 바람
 - 주민편익시설(3층) 등 복합건물로 계획시 공공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디자인 및 재료 검토 바람
- 경관향상을 위해 지상층 주차램프 최상층 지붕의 사선부분을 삭제하거나,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



- 주차램프 부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하기 바람
 - 주차램프 3층 외부 및 내벽에 대해 개방성 증가를 위해 채광창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
 - 주차램프의 입면 색상계획은 본 건물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계통의 색상으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바람
- 주차장 램프 주변 등 차량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여 주차면의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

- ‘지상1층 평면도’에서 지상주차장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“X7A,Y2’의 기둥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(권장사항)
- 장애인주차장을 지상부에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(권장사항)
- 건축물 정면 및 배면 3층에 테라스 공간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(권장사항)
- 1층 도로변 측을 셋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차량진입의 완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(권장사항)

공통사항

-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

2018.10.31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